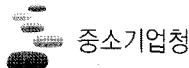


▶ 문의 :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(042-481-4447)



2010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

중소기업 경영·기술혁신의 IT 응·복합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

개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

■ 사업개요

- [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]은 생산·경영 등 기업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/W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
- 대상 사업 :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(구 정보화기반구축사업),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(구 생산설비정보화사업)

■ 지원과제

- 각 사업별로 신규과제, 개선과제, 연계과제로 구분하여 지원
- 신규과제 :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의 50%(최대 6천만원) 지원
 - 동 사업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
- 개선과제 : 1회에 한해 총 사업비의 50%(최대 4천만원) 지원
 -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또는 활용도 제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
- 연계과제 : 총 사업비의 50%(2년간 최대 1억 2천만원, 연도별 6천만원) 지원
 -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에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중 각 1개 이상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



■ 신청자격

- (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
 - ※ 신규과제는 '0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3만개 IT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신청 가능
 - ※ 개선과제는 정보화기반구축사업 및 '05년 이후 중소기업 진흥공단 3만개 IT화 지원사업 수혜기업만 신청 가능
- (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)
 -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, 관련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·제조 관련 설비를 2대 이상 보유한 기업
 - ② 주조, 금형, 소성, 열처리, 도금, 용접 등 제조기반 중소기업
 - ※ 개선과제는 생산설비정보화사업 기 수혜기업만 신청 가능
 - ※※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고 사업장 면적이 500m² 미만인 기업은 관련 법률에 의거,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



■ 지원내용

- (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) 업무의 통합, 의사결정의 정보화,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경영정보지원시스템(MIS), CRM, ERP, ECM, BPM, RFID/USN, 전자무역솔루션 등의 정보시스템 개발·구축 지원
 - ※ 네트워크와 DBMS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(홈페이지, Stand-Alone 방식 프로그램, 단일기능의 시스템 등 제외)
- (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)
 - ①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생산설비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POP, MES, CAPP, PDM, RFID/USN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설비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 개발·구축 지원
 - ② 주조, 금형, 소성, 열처리, 도금, 용접 등 6개 업종의 제조기반 산업에 생산공정에 IT결합, 기술융합 및 혁신 등 新생산기법 확산 지원
 - ※ 유해·위험 작업공정의 원격장비 도입, IT 기반 공정 자동화·최적화 시스템 구축 등 생산현장 및 공정의 IT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 제고

■ 지원규모(정부예산(안)) : 129억원

※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중소기업간 공동네트워크화 지원

■ 사업개요

- 제조현장에 IT를 활용하여 수평적·수직적 중소기업간 협업모델을 확대하고, 공동 네트워크화를 구축하여 기업 간 생산·물류까지 실시간 연계한 정보시스템 구축
- 정보화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·소규모 기업의 프랜차이즈화를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확장시키고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
- 대상 사업 : 공동네트워크화지원사업(구 협업정보화지원사업)

■ 신청자격

- (협업) 모기업을 포함하여 최소 5개 이상의 협력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 - ※ 컨소시엄의 2/3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
 - ※ 모기업 외의 중소기업은 '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신청자격'을 만족해야 함
- (프랜차이즈) 5개점 이상의 가맹점을 가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 - ※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은 '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신청자격'을 만족해야 함

■ 지원내용

- (협업) 기업간 생산, 재공재고, 품질관리, 설계, 물류 등의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지원
 - ※ 모기업 ↔ 1차협력사 ↔ 2차협력사간 양방향시스템 연계를 통해 Supply Chain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지원
 - ※ SCM(Supply Chain Management), PLM(Product life cycle Management), BSCW(Basic Support for Cooperative Work)등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간 생산·설계·물류까지 실시간 연계한 정보시스템 개발 지원
- (프랜차이즈)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닌 중소기업에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정보화를 지원하여 구성원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한 사업 활성화 지원
 - ※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특화된 e-SCM 및 공급사슬망 연계 등 프랜차이즈기업에 특화된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지원
- 지원 조건 : 정보시스템 및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%(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) 지원
 - ※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(기업당 최대 6천만원, 정보화지원사업 기 수혜기업은 최대 4천만원)

■ 지원 규모(정부예산(안)) : 10억원

클라우드 컴퓨팅 – SaaS 서비스 지원(시범사업)

■ 사업개요

- 중소기업의 IT기반 경영혁신 확산 및 정보화 저변 확대를 위한 SaaS 서비스를 지원하고,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및 생산혁신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한 중소기업형 SaaS 기반 맞춤형 정보시스템 제공
 - ※ SaaS(Software as a Service) : 소프트웨어를 제품 형태가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고객은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

■ 신청자격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

■ 지원내용

-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을 위한 SaaS 기반의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(서비스모듈별 구축 가능)
 - ※ (기)업단일기능) 경영/회계관리, 영업/마케팅/고객관리, 홈페이지/메일관리, 세무/회계관리, 보안관리 등 단일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S/W지원
 - ※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별도의 초기 구축비용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정보화 시스템 구축 가능
- 지원 조건 : SaaS 서비스 사용료의 70% 지원(최대 600만원)

■ 지원 규모(정부예산(안)) : 5억원



문의처

기관명	주 소
중소기업청	산학협력과 / 042-481-4400, 4401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정보화사업과 / 02-3787-0472~8
중소기업중앙회	공동사업팀 / 02-2124-3104